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

Theological Foundations and 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ing of Ministry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머리말 Preamble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는 신앙고백과, 전통, 이름, 체계, 관계 등으로 그 동질성을 유지한다. 국가 간 장벽을 넘어서 본 교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관계에 의해서 묶여진 세차원의 교회 (개체교회, 지방회, 총회)가 언약관계로 연결되어있다. 즉 각 차원의 교회는 행정과 목회의 자율성과 고유 권한과 책임을 지니는 동시에 상호 언약관계로 협력한다. 이 언약관계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준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

(크리스천 교회의 도안에 나오는 두 번째 문단에서 인용함) (2005 년 개정판)

~Ffrom paragraph 2 of The Design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2009 년 9 월 30 일 개정 1

서문 Preface

본 문건 (2009 년도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은 전국 총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과 케나다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2003 년에 제정된 "목회 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 문건을 2011 년 8 월부터 본 문건으로 대체 하게 된다.

목 차

Table of Contents

I.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

Theological Foundations for the Ordering of Ministry in the Christian Church (Discipes of Christ)

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회 The Ministry of the Whole People of God 3

나. 제자회 목회의 역사적 고찰 Historical Survey of Disciples Ministry 4

다. 회중을 위한 목회 Ministry in the Congregation 8

라. 목회 사역 Order of Ministry 9

1. 위임 목회 Commissioned Ministry 10

2. 안수 목회 Ordained Ministry 11

II. 목회 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

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ing of Ministry

가.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목회사역 Ministry in the Christian Church (Discipls of Christ) 15

나. 위임 목회 The Commissioned Ministry 15

다. 안수 목회 The Ordained Ministry 18

라. 안수 후보 자격 Candidacy of Ordination 21

마. 안수식 The Act of Ordination 22

바. 교역자 신분 Ministerial Standing 23

사. 안수 목회의 인정과 조정 Recognition and Reconciliation of Ordained Ministry 27

아. 교역자 청빙 및 해임 Ministerial Search and Call 32

자. 교역자 윤리 규범 Ministerial Code of Ethics 40

차. 목회자 비행 Misconduct 42

카. 청원의 권리 Right of Appeal 42

타. 개정 절차 Amendment Process 43

1.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

Theological Foundations for the Ordering of Ministry in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서문 Preface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는 그 정책과 기준과 서로 의존하여 전개되는 목회의 양상을 분명하게 해준다. 특히 변화하는 서비스의 요구와 증인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을 추구할 때에 그 근거를 마련해 준다.

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회 The Ministry of the Whole People of God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신다. 분열되고 불신앙적인 세상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친교(코이노니아) 속으로 이끌려진다. 이 몸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연합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세상 속으로 보내어 진다. (고전 12:12-13; 엡 4:4-5; 마 28:16-20).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을 선포하고 예시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기위해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우들은 증인된 삶과 섬김과 화해의 사명을 부여 받았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 되어졌다. 세례를 통하여 언약공동체에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믿음의 고백과 세례식은 특별한 부르심을 수용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친교하심에 대해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모든 크리스천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짐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탁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사역을 중재한다.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 그가 살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벧전 2:9) 따라서 만성도사제론을 공포하는 것이다. 즉 이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표현이 뜻하는 바는 복음의 증인된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자세를 통하여 증거 된 평신도 사역의 성결 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은 (the laos-그리스말로 "백성들" 은 영어로 하면 평신도라는 뜻이다). 전체 혹은 다양한 개인의 사역으로 표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확증하며 계속해 나간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의와 화해의 증인으로서 함께 연합됨을 뜻하는데 예배와, 일상생활과, 복음을 나누는 것과, 목회적 돌봄과, 인간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 하는 것과, 보편적 교회의 일치를 실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위임 받은 목회와 안수받은 목회가 제대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나눔의 사역 이라는 여건 속에서 구현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 내에서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대리자 사역이 존재해왔고 특별한 기능을 위해 교회에 의해 구별 되어졌다. 위임받은 직무나 안수받은 직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 특별한 한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면서 교회는 교회의 동질성을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대표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 목회에 대해 교회에게 주는 말)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권위와 축복이 안수식과 위임 식에서 경축 되어진다.

나. 제자교회 목회의 역사적 고찰 Historical Survey of Disciples Ministry

알렉산더 캠벨과 바톤 스톤은 성경에 의존했다. 특히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신약성경을 신뢰했다. 이러한 전제가 그들의 목회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다.

캠벨의 목회에 대한 태도는 제자회 운동이 발전하고 교회의 상황이 이에 맞는 지도력을 요구할 때 진전 되었다. 역으로 캠벨의 목회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유지 되었다.

---

1. 만성도사제론은 고백과 세례를 통하여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 온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것을 성례전 집행에 있어서의 장로의 역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라도 성례전을 집행 할 수 있을 지라도 제자회 전통에서는 정식으로 임명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례식과 성만찬을 집례해 왔다. 이러한 전통은 만성도 사제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초기 장로와 복음 전도자/설교자와의 구별에서 왔다. 복음 전도자는 개교회 밖에서 부름을 받았고, 설교와 가르침으로 제한 받았다. 장로는 교회 내에서 부름을 받았고 설교와 성만찬을 포함하는 회중 통치의 책임을 맡았다. 성만찬 집례의 특권과 책임은 장로와 목사의 역할로 증대 되었다.

그는 목회의 컨트롤로부터 자유를 증대시켰으나 목회와 조직의 질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동의점이 있다면 목회의 형식이나 기능이 다르게 표현되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목회를 섬기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

비록 알렉산더 캠벨은 충실하게 반 성직적 이었을지라도 목회 지향적인 사람이었다. 이러한 자세는 1820 년대에서 1830 년대에 이르는 세례의 다양한 페이지를 통하여 정교하게 가다듬어 져왔다. 그 당시의 성직이란 캠벨에게는 어느 특정한 교단이나 분파의 신조를 정당화 시켜주는 계급의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반대 입장은 전문 성직자- 지역회중교회의 독립적이고 자체에만 책임 있는-에 대한 것이었지 교회의 삶에 필수적인 목회의 실행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캠벨은 목회의 역할을 아주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특별한 공식을 발전 시켰다.

1. 영속성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직무를 설립한다.
2. 그 직무에 근무 할 최상의 유자격자를 선출한다.
3. 성별하여 직무에 임명한다.
4. 온전히 그 일에 몰두하며 계속 성장해간다. 그래서 모두가 그의 성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The Christian System"에서 그는 이렇게 요약하였다.:

> 크리스천 공동체의 결코 변치 않는 사역은 감독 (장로), 집사, 복음 전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비록 다양한 은사를 소유 했을 지라도 오직 하나의 규칙이 있을 뿐이다. 감독, 집사, 복음 전도자는 평범한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CS,82-3) " 목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 감독과 집사와 복음 전도자는 각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감독은 감독의 사역을, 집사는 섬김의 사역을,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한다.

캠벨의 관점에서 볼 때, 이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는 목회자들은 용납되지 않았다.
한 교회에서 임명된 교회 지도자는 다른 곳에서도 유지 되거나 혹은 무효 되었다.

---

2. 감독 혹은 장로는 episkopos 라는 그리스말의 엇갈리는 번역이다.

3. "Millennial Harbinger" 라는 잡지의 1835 년도 판에서 캠벨은 이렇게 썼다: "감독의 관할권은 그를 안수한 회중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단일교회가 신약에서 알려진 가장 큰 교구이다.
감독의 선출이나 안수임직이 영구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가 교회를 떠나야만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리고 다른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그 교회가 그를 선출하고 안수 할 때까지 사적인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1832 년에 제자교회와 크리스천 교회가 단일화 된 후에 교회가 성장 하였을 때 캠벨은 지역교회 치리 장로와 교회를 순방하는 설교 장로 사이를 구별할 필요를 느꼈다.

바톤 와렌 스톤 Barton Warren Stone

"1831 년도에 발행된 Christian Messenger 에서 바톤 스톤은 목사의 직이 "감독과, 장로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를 포함한다고 썼다. (CM, 5:7/31, 162) 스톤에게는 목사직이 많은 기능 중 한 직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성례전을 인도하는 것과 세례와 주님의 만찬을 인도하는 일 그리고 그의 장로 전통에 따라, 교회내의 도덕적 감독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캠벨과 다르지 않게 감독/장로, 목사는 회중교회내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면, 복음 전도자는 순회 설교가요 동시에 개척교회 설립자였다. 비록 스톤은 집사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Christian Messenger 에서는 이렇게 묘사했다. "Diakonos" 라는 단어가 집사로 번역이 되었으나 통상 목사라는 의미가 단어 속에서 적용되었다. (CM, IX:2/35, 45)

1804 년 발행된 스프링필드 노회의 유언과 증언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에서 이렇게 결의 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래의 내적 통치권한을 되찾는다. 즉 목사 후보자들의 견고한 믿음, 경험적 종교의 익숙함,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내적인 확신 외에 다른 권위로 부터의 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27 년도 발행된 The Christian messenger 에서 다시 한 번 목회 사역 후보에 대해 말했다. 즉 후보자는 교회 내에서 그 자격과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뜻하였다. 이것은 "The last Will and Testament" 에서 교회가 후보자를 신뢰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더 나아가 자격증 받은 설교가나 안수받은 장로만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주장했다. "목사라는 개념"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바울의 경향을 강하게 환기 시켰다 즉 설교자는 시골 언저리를 방황해서는 안 되며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보냄을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CM, 1:2/27, 80)

스톤은 목사의 직을 단지 그 기능을 알림으로서가 아니라 그 권위에 의해서 고양 시켰다.
그는 공직임명과 공직 안수로서 구별을 지었다. (CM, IX: 2/35, 45) 사도행전과 목회서신을 통하여 그는 주장 하였다 " 사역을 감당하기위한 안수식은 신약교회에서는 장로들의 손을 얹음으로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행동 없이는 법적으로 사역에 돌입 할 수 없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는 감독 (장로) 과 집사가 있었으나 다른 교회에는 없었다. 그 밖에 에배소, 안디옥, 로마와 예루살렘에서는 존재하였다. " (MH, VIII:10/35, 503)

안수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캠벨은 스톤처럼 이렇게 대답했다. “금식과 기도로 손을 얹으라. 그렇게 함으로서 시작부터 크리스천교회의 목회에 임하는 사람들은 성별 되어야한다.” “누가 감독과, 집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안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의심 없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회중에 의해 입증된 공동체, 전체 공동체.(MH, Vii:10/35, 498)

그러나 캠벨의 위치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것은 안수에 대한 권위였다. 캠벨은 회중으로 하여금 임명하고 안수하도록 했으나, 스톤은 목사직은 회중이 하도록 했지만 목사 협의회나 이미 안수 받은 그룹이 안수위원이 되어야한다고 믿었다.

<u>후기 관점들</u> Later Views

회중 밖에서 안수받은 목사들을 찾는 것은 1840 년대와 50 년대에 급히 불어난 교회들에 의해서 야기된 지도력 문제를 도출하게 되었다. 개교회 내에 유자격자가 없을 때가 있었다. 젊은이들이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 시작했다. 복음 전도자들도 잘 알려졌으며 교회 설교가로서 준비 되었고 큰 자원이 되었다.

20 세기가 되자 제자교회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다. 목회사역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었다. 1935 년 센 안토니오 세계총회에서 사목위원회가 1939 년에 임명되었다. 리치몬드 세계총회는 안수위원회라 불리는 시스템을 승인했다. 구성원은 세 개 이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었다. 스톤의 말에 의하면, “교회의 후보들을 시험하라” 여전히 지역교회의 일로 간주 되었지만 목회자 협의회에 의해서 수행되는 스톤의 안수 시스템이 만족을 주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목사들이 교회임직을 옮길 때에 보다 폭넓은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부여했다.
그 효과로 총회는 노스 케롤라이나에 있는 흑인 제자교회의 본을 따르고 있었다. 즉 이것은 이미 1886 년에 결정 된 것이었는데 안수는 지역교회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었으며, 안수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채택했다. 여전히 일부 교회들은 외부의 자문 없이 안수를 거행해 왔지만 점점 이러한 일은 드물게 되었다. 1964 년 디트로이트 세계총회에서 교회는 공적으로 안수 자격으로 신학대학원 학위를 추천 하였으며 수년간 어떤 교회들은 학위를 필수과정으로 엄격히 수행하였다.

<u>목회 자격증의 기원</u> Origins of Licensed Ministry

1939 년 리치몬드 총회에서는 3 차원의 안수 기준을 보고했다:

1. 선한 도덕적 특징과 인격적 무흠
2. 대학과정과 가능하면 신학대학원 과정 이수
3. 참된 지도력, 비전, 목회적 자질, 설교 능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경험

1 번과 3 번을 만족시키지만 2 번이 없는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분류이었다.

자격증 목회는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것처럼 제자교회의 역사에서는 최근의 일이다.
바톤 스톤은 노스케롤라이나의 오렌지 노회에서 자격증 받았는데 사역자는 노스캐롤라이나 아래쪽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로서 일을 했다.

알렉산더 캠벨은 1811 년 브러쉬 런 모임 장소에서 설교하도록 자격증을 받았다. 스톤- 캠벨 시대에 "설교 자격증"은 안수 전에 거치는 시험 기간이었다. 즉 이 후보가 인간의 철학이나 결점, 원리들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기간인 것이었다. (Last Will and Testament 참조)

1948 년에 교회는 자격증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 했는데 주로 목회 준비 중인 대학생이나 파트타임 목사로서 섬기기를 원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었다.(자격증과 안수, 1948 년 문단 16) 이의 혜택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풀타임 사역자를 모실 수 없는 소규모의 교회들이었다. 이중의 목회임명은 제자교회의 도안 (1968 년)과 목회 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 (1971)에서 체계화 되었다.

<u>천년의 전환기에 떠오르는 관행</u> Emerging Practic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20 세기의 끝을 향하여 고등교육을 기준으로하려는 경향이 그 정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준비 양상이 다양해졌다. 어떤 지방회는 목회적 포맷의 단일 모델로는 너무 제한이 많아서 변화하는 목회의 상황에 신실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신학 대학원협의회 (ATS)에서 인가된 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가 없어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사실상의 다른 교육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안수받은 목회자를 위한 교육적 기준에 어떤 새로운 합의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 회중을 위한 목회 Ministry in the Congregation

장로와 집사를 추천하고, 선출하고, 임명하거나 인준하는 것은 제자교회의 통상 관행이다
이러한 직책을 통해 섬긴다는 것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성숙, 기도. 통찰력, 그리고 지도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된다.

장로와 집사직은 교회 회중에 의해서 진행된다. 선출 혹은 인준을 거쳐 적절한 예식과 함께 직임을 맡고 그에 상응하는 사역을 수행한다.

가. 장로로 선출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내의 목회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는다. 예를 들면 침례식이라든지 성만찬 집례, 예배인도와 목회적 돌봄과 영적인 지도력 발휘 등이 이에 속한다. 장로직은 자발적인 사역이다. 각교회는 2명 이상의 장로를 둘 수 있다.

나. 집사로 선출된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종사하게된다. 예를 들면, 침례식이나 성례전 집전 예배인도, 목회적 돌봄, 영적 지도력 발휘하도록 섬김으로 돕는다. 집사직은 자발적인 사역이다.(크리스천 교회 도안 문단 87)
장로와 집사직의 역할은 믿음의 공동체와 보다 큰 차원의 공동체내에서 회중을 대표하는 사역임이 명백하다. 예를 들면, 장로와 집사는 병원이나 양로원 혹은 집에서 요양하는 교우들을 방문한다. 혹은 사회봉사나 사회정의 등을 위해 회중을 인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만찬 집례시에 목사와 장로는 집례와 기도를 하고 집사는 봉사할 때 교회의 전체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 목회 사역 Order of Ministry

“교회는 목회 사역이 전체 사역을 만족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을 무장시키도록 하나님의 주권아래 구별 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제자교회의 도안 86 문단)

목회 사역에서 제자교회는 위임받은 사역과 안수받은 사역을 구별하여 인식한다.
교회는 위임받은 사람과 안수받은 사람이 교육적 자격과 개인의 진실성, 목회의 실습 등 그 탁월함을 증명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물론 확실한 소명과 목회에 대한 열정을 포함하는 자질을 말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교회는 이들 후보자들을 지역교회차원과 지방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영적 은사를 남자와 여자에게 매 세대마다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위임받을 사람과 안수받을 사람을 결정 하기위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후보에게서 찾는다.

- ♦ 개인적이고 내적인 하나님으로 부터의 소명을 받았는가,
- ♦ 영적인 은사가 있는가,
- ♦ 개인적 특성과 적성이 맞는가,
- ♦ 준비와 약속 (예, 교육, 기술 등)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교회는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혹은 안수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반복적으로 역사를 통하여 제자교회는 목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20 세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제자회는 안수를 위해서 신학대학원의 학위를 자격 기준으로 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한편 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목회의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도 인정 하였다. 예를 들면, 목회 상황이라든지, 공동체의 상황이라든지, 문화적 혹은 소수민족 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회 준비 과정을 인정 하였다.

1. 위임 목회 Commissioned Ministry

제자회의 목회 이해에 대한 발전 과정에서 위임목회는 자격증 목회를 대신하는 것이 되었다.
남녀는 지방회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역을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사역하도록 위임 받았다. 위임 이란 말은 사역이나 복음 선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도록 임명되거나 권한 위임을 받거나 임명되고 부름 받는 것을 뜻한다. (The Nazareth Consensus, 1 문단 8 페이지)

위임 이라는 단어는 “mission" 선교 즉 영적인 기대를 위해 무대를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바울은 그 자신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위임 받았다고 묘사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골 1:25).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후 1:21)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후 2:17) (표준 새번역 개정판)

위임받았다“는 말은 사용되어왔고 계속해서 교회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거나 다양한 직무에 임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목회를 위해서 위임받은 교회적인 사역임을 내포하고 있다.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영어 번역인 위임 (Commission) 혹은 위임받은 (Commissioned) 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현대적 상황에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다.

위임은 교회가 위임받은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를 인지하고 교회와 위임받은 이가 함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위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새로운 권한과 책임이 주는 엄숙한 사명을 수행한다. 동시에 다른 동료 목회자들과 협력관계로 들어간다. 위임 받은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는 목회자의 소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위임 예배의식은 지방회와 연대하여 지역 개교회의 예배 상황에 맞추어 진행한다.

2. 안수 목회 Ordained Ministry

가. 안수의 의미 The Meaning of Ordination

성령의 임재를 간청하는 기도와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하여 교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인지하고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승인한다.

이 사역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 거행되는 안수식은 교회가 예수그리스도와 사도적 증인들과 연합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 예식이 부활하신 주님이 참 안수자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상기 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아래 교회는 안수를 함에 있어서 진실된 복음 선포와 겸손한 예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손을 얹는 행위는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는 것이며,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계시 안에서 제정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그 위임자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목회, 세례, 성례전과 사역, WCC, 문단 40)

제자회는 안수식의 의미를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사역으로 이해한다. 즉 안수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 힘을 얻으며 회중의 인정과 기도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목회 안수는 삶과 교회의 증인된 삶에서 지도력 발휘의 한 부분을 이룬다.

한편 안수 받는 사역이 단순한 일상적인 일과 가운데 하나로 격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목회안수는 교회의 삶과 증인된 삶의 다음 세 가지 근본적인 면에 관하여 지도력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세상에서의 섬기는 삶과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2) 예수그리스도께 신실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함: 말씀 (가르침과 설교)으로,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으 로, 그리고 실행 (선교와 섬김)으로.
(3)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 교육, 증인, 선고, 친교, 목회적 돌봄 등 사역에 대해 공동체의 삶을 감독하는 것.

목회 안수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는 중에 교회는 섬김의 사역, 말씀 선포, 감독의 기능이 계속해서 교우들에 의해 지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추구해야한다.

"A Word to the Church on Ministry" 로부터 인용 (1985)
Commission on Theology, 제자교회 3 페이지
자격증 목회 실행 팀에 대한 대화 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된 제언
(2004 년 7 월) 2003 년 5 월 Barton College 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조성된 제안임.

b, 안수 목회의 특징 The Character of Ordained Ministry

제자회는 안수 목회를 믿음의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매 안수식마다 목회 사역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인됨을 추구 한다:

1) 사도적 목회: 안수 받은 자들은 사도적 사역으로 입문하는 것이다. 그 뜻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뜻한다. 신약에서 가장 처음 목회자들은 사도들이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세상 끝까지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행 1:8) 목회자들은 초기 사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매 세대마다 설교하고, 경축하고, 증인되는 제자로 모인다.

2) 대표 사역: 안수 목회는 대표 사역의 증인 역할을 한다. 말씀과, 성례전과 선교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세상과 세례 받은 크리스천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역과 증인된 삶의 특징을 다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표 사역의 중심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교회가 믿음과 선교와 일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3) 협동 목회: 안수를 받은 사람은 협동사역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목회는 본질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사역이다. 어느 목사도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이지 않다 서로 돌보고 지원하는 협력 관계를 위해 함께 가르치고 일하는 자세를 추구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성도사제론은 결국 서로를 도와주며, 상호 보완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모든 지체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있다.
직업이나, 교육 등의 차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서로 돕고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나 평신도가 연대하여 증인으로서 함께 일한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있어서 교회가 효과적인 참여를 하도록 서로 권한을 부여한다.

4) 보편적 사역: 안수는 범 교회의 예식이다. 안수가 어느 특정한 교단에 의해 수행될 때 그리고 회원자격이 어느 특정한 공동체에 제한 되어있을 때라도 그 의도는 특정한 교단이나 전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제자교회로 묶이는 것도 아니다).

안수 받은 사람들은 보편적 교회 즉, 하나이며 거룩한 공회인 사도적 교회를 대표한다. 이러한 보편적 비전을 가지고 섬기는 한편, 교회는 분열로 아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모든 목사들은 예수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새로운 보편적 교회를 위하여, 분열된 교회로는 표현 될 수없는 일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C. 안수 목회의 직임 Office of the Ordained Ministry

신약 성경에서는 청사진처럼 한가지의 사역 형태만을 혹은 교회의 미래 목회의 기준을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다른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존재했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성령께서 교회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예배와 선교 등 초기부터 있었던 다양성을 더 발전시키고 정착하게 하여서 보다 더 보편적인 사역으로 정착 시키셨다. (BEM 문단 19)
1985 년에 신학 위원회는 다음 3 개의 직임을 포함하는 단일 목회사역을 전교회에 천거하였다.

이러한 목회지도력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인정된 교회 생활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해준다.

♦ 섬김의 사역: 교회와 세상을 위한 섬김 (집사), 증인으로서의 삶과 종으로서의 사명.
♦ 선포의 사역: 말씀과 성례전 (장로 혹은 목사), 설교, 가르침, 성례전 (성만찬과 세례) 수행
♦ 감독의 사역: (감독) 교회공동체의 삶을 감독.

하나의 안수목회 사역 안에 3 개의 지위가 있다 동시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Theological and Historical Foundations"로부터 인용, 크리스천교회의 안수식 서비스와 가이드라인, 국내선교국과 교회일치 위원회, 1990 년 1-2 페이지 본 목회사역은 초교파 운동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의 방침으로 나타나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의하여 채택되어진 패턴이다. 예: Anglican, Methodist, Roman Catholic, Orthodox,
Lutheran, United Churches, 미래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diakonos, presbuteros, episkopos 명칭은 디모데전서 3 장 5 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그 뜻은 집사, 장로, 감독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직위는 상하구조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세 가지 차원의 안수 사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세례 받은 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A Word to the Church on Ministry 3-4 페이지)

사람들은 특별한 직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사역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수를 받는다. 교회는 목사들을 그 세 가지 중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어 청빙 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직위는 어느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역은 세 가지 직위의 다양한 역할을 내포한다.

d. 안수식 The Act of ordination

옛날 초기 크리스천 들은 전통적으로 안수식을 예배의 상황 속에 두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만찬의 상황아래 두었다. 이러한 안수식의 위치는 안수를 전 공동체의 행동으로 견지했음을 뜻한다. 지명 받은 사람들의 손을 얹어 행하는 안수식은 동시에 성령의 부르심과 상례적 싸인 그리고 각종 은사와 책임을 인정 하는 것이다.

안수식에서 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안수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확신 속에서 안수를 거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특별한 관계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안수는 믿음으로 행해진 싸인이다. 그 믿음은 들려진 말씀과, 제스처와 형태를 통하여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그를 통하여 영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끝으로 안수란 교회가 안수 임직자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와 임직자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안수식을 통하여 교회는 새 목회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교회는 목사의 은사를 인식하고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 개방적이 되기로 작정한다. 이와 같이 안수받은 이는 그들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들 또한 새 권위와 책임이 주는 무거운 짐과 기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동시에 모든 목사들과 함께 협력 관계로 들어간다.

BEM, Ministry 41 페이지에서 인용

BEM Ministry 43 페이지에서 인용

BEM Ministry 44 페이지에서 인용

II. 목회 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

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ing of Minkistry

가.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목회 사역

Ministry in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1. 목회사역: 위임 받은 목회자와 안수 목사로 구성된다.

2. 목회사역을 위한 개인적 자격: 교회는 목회사역을 맡을 만한 유자격자를 찾는다:

   a.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제자로서의 삶에 헌신하며, 영적 훈련을 쌓는다.

   b. 교회에 의해서 확인 받은 목회에 대한 소명의식

   c. 목회에 대한 이해

   d. 신학적 고찰 능력

   e. 강한 도덕적 특성과 개인적 성실성

   f. 건강한 목회를 감당할 영적, 육체적 그리고 감성적 건강함

   g. 인간관계 유지 능력과 돌봄과 사랑의 능력

   h. 책임감 있는 개인적 재정관리 능력

   I. 하나님의 은사 사용에 있어서 지혜롭고 관대한 청지기직 사명

   j. 목회적 사역을 위한 기술과 능력

나. 위임 목회 The Commissioned Ministry

1. 내용 설명: 위임 목회는 교회에게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목사, 복음 전도자, 기독교 교육 관계자, 음악 목사, 청년 목사, 간호원, 채플린, 직업을 가진 목사, 회중에 의해서 혹은 비회중에 의해서 인정된 커뮤니티 목사, 혹은 다른 사람들 (지방회가 양육과 권한을 베풀 수 있는 곳의 경우)

2. 위임 목회의 공통 기준:

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될 것:

♦ 위임을 받을 지방회에 속하는 제자교회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름 받은 개교회, 지방회, 혹은 전국 총회에서 인정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 인정된 교회나 크리스천 교회에 의해서 위임에 대한 추천을 받아야한다.
(교인으로 등록된 교회를 포함한다.)

♦ 지방회 위임 위원회 혹은 사목 위원회 (위임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와 면담을 가진다.

♦ 지방회의 다른 기대사항도 동의한다.

위임을 수락할 때, 목회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는다. 또한 목회자의 기능을 만족시키고 크리스천 교회의 도덕 윤리 강령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위임 목회자의 지위는 크리스천 교회를 대신하여 목회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임 목회자는 결혼예식을 수행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지방회에서 위임 받은 목회자는 특수한 상황의 목회를 위해 부름을 받는다. 목회 상황이 바뀌면 지방회에서 재위임을 받아야 한다.

3. 위임 목회의 분류:

a. 위임받은 목회자 (안수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장소에서 목회 하는 남녀 사역자들이다. 그들의 부름은 상황적이고, 특수한 경우이며 지방회에 의해서 확증된다. 편성과 교육은 지방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와 의논하면서 성취될 수도 있다.

b. 위임 받은 목회자 (안수를 추구 할 경우): 이들은 교회나 지방회가 승인한 청빙된 곳에서 섬기는 남녀 사역자들이며 지방회의 돌봄을 받는다. 그리고 안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연구와 구조 편성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4. 위임목회 후보자:

a. 정의: 후보자격은 일정기간동안 그 후보자가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청빙을 받고 지방회와 위임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

b. 후보자격은 한 개인이 크리스천교회의 인정된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거나 혹은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경우 위임을 위해 지방회에 신청한다.

c 후보 자격 과정. 후보자는:

1. 제자교회의 회원 이어야한다.
2. 소속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한다.
3. 목회자 프로파일을 완성해야한다.
4. 지방회 사목위원회와 면담을 해야 한다.

d. 지방회는 목회 사역을 위해 후보자의 영적, 정서적, 도덕적, 지적, 교육적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수행한다. 개인 인터뷰, 추천서, 배경 확인, 심리와 직업 테스트, 교회회중과 면담, 상호 관계에 있는 지방회와의 조정업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리고 교육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e. 승인된 경우 지방회는 그 후보를 돌보고 특수 사역에서 사역 하도록 위임한다.

5. 지방회의 책임: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위임목회 후보자를 평가하기위해 절차를 수립 한다.
목회자 프로파일과 교단차원의 형사 처분 여부의 배경 확인.

b. 소수 민족일 경우 해당 민족의 교단총회 행정 책임자와 상담

c. “under care", 돌봄의 상태로 분류된다.

d. 양육한다.

e. 다른 동료 목회자들과 협동관계를 제공한다.

f. 목회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적합한 연구 프로그램 (독서, 경험적 교훈, 집중 주간 세미나, 멘토링, 원거리 수업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

g. 위임 목회자로서 후보자 지명을 승인한다.

h. 여러 자원들을 제공하고 지방회장이나 지역 담당 목사들이 위임 식에 참여한다.

i. 안수 후보자를 위한 과정과 절차를 감독한다.

j. 목회자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반 인종주의 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을 장려한다.

k. 필요시 추가 필수사항을 첨가한다.

다. 안수 목회 The Ordained Ministry

1. 정의: 안수를 함으로서 교회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창의적인 섬김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을 부름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내에서 또한 전체 예수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는 것이며, 교회의 대표로서 사역을 수행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안수받은 목사는 제자교회의 세례 받은 성도이다.

   안수를 수락함으로서 목사는 교회를 돌보고, 마음과 몸과 영혼을 섬김을 위해 내어주며 목회자의 기능을 완수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며,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의 목회자 윤리 규범을 따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언약하는 것이다.

   안수받은 목사의 지위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를 대신하여 목회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안수는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모든 법적요건을 갖출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있다.
   역사적으로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으로 불렸고, 많은 다른 사역 중에서 이 사역은 다음과 같은 지도자들을 포함한다. 목사, 교사, 초교파적 리더, 인정받은 회중교회에 기반을 두었거나 두지 않은 커뮤니티 목사들, 캠퍼스목사, 목회 상담가, 지방회나 총회차원에서 섬기는 목사.

2. 교육적 요건: 목사 안수 준비를 위한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다: 견습과정과 신학대학원 교육 과정
   - ♦ 견습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지방회에서 인정하는 250 시간의 관련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마침으로서 목회실천 16 개 분야에서 유능성을 증명해야한다.
   - ♦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케나다의 신학대학원 협회 (ATS)가 인정하는 신학석사 (MDiv) 과정을 마침으로서 목회실천 16 개 분야에서 유능성을 증명해야한다.

   안수 후보자는 지방회와 협의한 후 지방회 사목 위원회가 그 후보들의 경제적, 언어적, 직업적, 혹은 가족의 상황 등으로 인해 견습과정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을 밟기를 기대한다. 선택된 교육적 과정에 관계없이, 교회는 남녀 후보자들이 다음 목회 실천현장에서 유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성경지식: 성경에 뿌리깊이 기초한 지식과 성경의 본래의미와 현대적 상황에 알맞은 해석과 설교 능력.

교회 행정과 계획: 교회의 각종 팀과 위원회들과 협력하여 회중의 삶을 풍요하게하기 위하여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뛰어난 행정력을 갖추기기를 기대한다.

의사소통: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능력.

타문화와 반인종 주의 경험: 다른 문화권에 대한 편견과 인종주의에 대한 세심한 인식과 이를 대면하고 극복하려는 의지.

초교파 주의: 사명을 시작하는 장소로서 초 교파적이고 전 세계적인 교회의 비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통의 복음의 증인됨과 섬김의 프로그램 등을 다룸에 있어 다른 크리스천과, 다른 교단과 다른 신앙인들과 함께 일하려는 책임감을 표출한다.

교육과 지도력 개발: 크리스천 교육의 기초와 지도력 개발의 원리를 안다. 어린이 교육과, 청소년, 성인,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회 직원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보인다.

도덕: 교인들로 하여금 정의, 도덕, 윤리 문제 등에 대한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 비평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전도: 교인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누도록 도와주는 능력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 예수그리스도와 예언자들에 의해 주어진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 문 밖에서부터 지구 끝까지 선교에 전념하도록 회중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는 능력.

목회적 돌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케 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상황과 관계를 판단하며 문화와 상황에 대해 세심하게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하는 능력.

말씀 선포: 크리스천 설교의 이론과 실천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나누며, 회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

영적 개발: 개인의 영적 성장을 인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풍요한 영적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 원리를 세우고 유지하는 능력.

청지기: 모든 창조된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풍요한 선물을 인식하고 이를 관대하게 나누는 건강한 청지기직을 수행하도록 개발하고 독려하는 능력.

신학: 크리스천 전통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과 활동의 일관성 있는 관점을 확실히 하는 능력, 인간의 상황을 믿음의 관점에서 관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신학적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능력.

전통에 대한 이해: 기독교 역사와 사상,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의 역사와 구조, 실천과 철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

예배: 크리스천 예배의 목적과 예배요소에 대한 지식. 예배 팀, 음악담당자, 교우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의미 있는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능력.

3. 지방회의 책임들:

지방회들은 견습자용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지방회들과 혹은 신학교육기관이나 초교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러한 견습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기관은 커리큘럼 평가를 위해 총 사목위원회에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회 친교단체 (협회)는 지리적으로 근접거리에 있는 지방회들의 모임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모임이 있다:

ROSES (Regions of the Sun Equipping and Serving; Oklahoma, Southwest, and Great River);

WRIM (Western Regons in Ministry; Arizona, Pacific South West, Northern California-Nevada, Oregon, Northwest, South Idaho, Montana, Central Rocky Mountain); SERF (South East Regional Fellowship: Florida, Alabama-Northwest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Virginia, Kentucky, Tennessee);

NIRF (North East Inter- Regional Fellowship: Canada, Northeast, Pennsylvania, Ohio, Capital Area, West Virginia, Michigan);

HEARTLAND (Heartland Regional Fellowship: Nebraska, Kansas, Greater Kansas City, Mid America, Upper Midwest, Illinois, and Wisconsin, and Indiana).

특히 지방회에 할당된 책임들은 다음과 같다:

a. 안수 지원자들을 평가하기위한 절차 설정

b. 견습 프로그램 후보자들의 교육적 경험을 평가한다. (고교 졸업증 혹은 동등 자격, 고등교육후의 경험).

c. 소수 민족 지원자일 경우 교단총회 행정 책임 목사와 협의한다.

d. “지방회 돌봄”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e. 양육

f. 후보자 후원교회와 관계를 가지며, 후보자의 교육배경 점검

g. 안수식을 승인하고 감독한다.

h. 연장교육을 촉진 한다 (목회자 윤리 교육과 반인종 주의 세미나)

라. 안수 후보자격 The Candidacy for Ordination

1. 정의: 후보자격은 일정기간동안 그 개인이 지방회 사목위원회의 돌봄을 받고 안수식 참여에 대한 준비를 위해 특별 연구 프로그램과 그 편성에 관여한다.

2. 후보자 지원: 후보자 지원은 남성 혹은 여성이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를 통하여 목사 안수 의도를 천명하고 그들의 회중이 그 의도를 확증 할 때 시작된다.

3. 후보자 기준: 지원자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의 침례 받은 회원이며 지원서를 그가 속한 지방회에 제출한다, 신학생의 경우도 그가 속한 지방회에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 지방회장과 지방회 사목 위원회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도록 되어 있다. 다른 지방회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자는 해당 지방회 소속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한다.

   지원자의 서류를 받으면 지방회는 평가 과정을 시작 한다 (개인 면담, 추천서, 배경 검사, 심리테스트. 회중과 인터뷰, 지방회와 협력, 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 영적, 감성적, 도덕적, 지적, 그리고 목회의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지원자의 교육적 능력. 승인이 되면, 지방회는 지원자를 후보자로 받아들인다.

후보자가 되면 그 개인은 지방회 사목 위원회의 ‘Under care" 돌봄과 안내를 받게 된다 (지방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 우든지 관계없이 사목위원회의 돌봄을 받는다).

4. 후보자격 중의 인증 절차: 지방회에서 마련한 통찰력 기간을 통하여 안수준비를 한다. 준비는 위임 목회자 (안수를 추구하는) 로서 인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 후보자는 위임 목회자로서 섬기지 않아도 각 과정이 요구하는 교육적 필수 요건을 마쳐야한다.

   후보자격과는 별도로 위임 목회자 지위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를 대신하여 목회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후보자로서의 지위 부여가 결혼 예식을 행하는 대 대한 법적 요건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 도 있다.

5. 안수 준비. 안수 후보자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목회를 위해 잘 준비해야한다. 다음 분야는 지원자의 목회 수행능력을 지원하고 강화 한다:

a. 크리스천 교회의 삶과 사역을 준비한다.

b. 후보자가 크리스천 신앙의 이해와, 성경, 보편적 교회, 역사와 행정,크리스천 사명의 형성과 기능을 나타내도록 신학적 연구의 폭을 넓힌다.

c. 전문적이고 초교파적인 연구, 목회의 현장에서 감독 받은 경험 그리고 후보자가 섬기기를 희망하는 목회분야에서 유능성을 보여 준다.

d.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조직체로서 존재하는 교회와 책임 있는 관계를 형성 하고 교회를 염려한다.

e. 개인적 성격, 크리스천 통찰력, 영적 형성, 목회에 대한 복지와 훈련된 책임감 강화

f.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목회 윤리강령에서 요약 된 대로 목회적 관계와 개인적 임무수행을 인도하기 위하여 도덕원리를 지킨다.

6, 후보자격의 종결. 처방된 연구 프로그램의 완성 (견습생 트렉) 혹은 신학대학원 협회 (ATS) 에서 승인된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학석사 (MDiv)나 이와 동등 학위 수여 신학대학원 트렉) 가 안수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후보자격은 안수를 받거나, 자원해서 철회 하거나 혹은 지방회의 결정에 의해서 종결된다.
후보자격의 종결은 7년 안에 이루어 질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지방회의 자유재량에 따라 연장 될 수도 있다.

마. 안수식 The Act of Ordination

안수식은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에 의해서 제정된 안수요건을 충족시킨 유자격자에게 전체교단을 대표해서 개교회와 지방회에 위탁한 안수과정이다.

1. 후보자는 어느 인정된 교회나, 후보자가 교인으로 등록된 제자교회에 의해서 안수식을 하도록 추천된다.

2. 안수식은 지원하는 교회와 지방회의 승인과 안내를 받아 진행하되 지방회장이나 지방 회장을 대신하는 목사에 의해 집례 된다.

3. 안수예식은 일반적으로 지원 교회에서 열린다.

4. 안수식에 참여하는 대표들은 교회와 교회들의 대표, 지방회소속 교회, 초교파 교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총회 대표가 참석할 것이다.

5. 목회자 윤리 강령 법에 사인한 후 사인된 안수증이 해당 지방회에 의해서 발행될 것이다.

바. 교역자 신분 Ministerial Standing

1. 정의: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에서 스텐딩 (지위) 이란 교단내의 목회를 위하여 자격인증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교회의 부름과, 교단과 초교파에 속하는 다른 목사들과 협력 관계를 위하여 주어지는 자격을 말한다.

   a. 스텐딩은 위탁받은 혹은 안수받은 목사가 현재 목회현장에서 사역에 종사하는 것을 확증해 주며, 풀타임이든지 파트타임 이든지 교단에 속한 교회나, 관련 기관, 지방회 혹은 총회의 사역에 계속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해당 목사들의 명단이 교단 연감에 수록되어 있으며, 교회의 부름을 받거나 목회상담, 초교파적 인증 혹은 장학금 혜택 등을 위해 참고 될 수 있다. 또한 교단 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b. 안수받은 목사는 청빙 및 해직을 위한 'Search and Call"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수 후보자는 그가 속한 지방회장의 자유 재량권에 의해 청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c. 목사 자격증 발급과 자격유무에 대한 연례 점검의 책임은 당사자가 속해있는 지방회에 있다. 목회 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에 있어서 지방회가 추가로 내용이나 절차를 개발 히는 것을 금지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것이 교단의 목회사역에 부합하는 한.

   d. 지방회에 속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자격 증명서 발급과 그 자격 유무에 대한 연례 검토는 교단 총 사목위원회의 책임 하에 있다.
   비 지방회 사역은 국외와 케나다의 모든 사역을 말한다. 이러한 사역들은 교회의 총 사역에 관련된 사역이고, 초교파적인 사역이며, 지방회를 벗어난 사역이며, 북미 혹은 해외에 있는 종교관계 기관, 풀타임 군목, 연방 교도 담당 형목 등을 포함한다. 모든 다른 사역들은 주요 사역지에서 결정 된 것처럼 지방회 사역으로 정의된다. 총 사목위원회는 자격증을 주는 기능은 하지만 안수를 행하는 체계는 아니다; 안수는 개교회와 협력해서 수행하는 지방회의 영역이다. 지방회와의 언약아래서 총 사목 위원회는 지방회에 그 지방회 내에 거주하지만 총 사목 위원회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잇는 사람들에 대해 통보한다.

e. 지방회장은 성례전과 섬김의 사역을 하는 교회 사역의 상징으로서 목회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큰 차원의 교회 개념을 증진 시키고, 교단의 사명이나 비전을 지지하고 변호하기 때문에 (Marks of a Faithful Regional Church, August, 2006) 목회 직 자격증에 대한 책임은 지방회장이 섬기는 지방회와 총 사목위원회에 있다. 매년 지방회장은 지방회와 교단 총 사목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목회직 자격증 서류를 작성한다.

2.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에 의해서 위임 혹은 안수받은 자격증

a.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의 목회사역에 따라 위임 혹은 안수의 직권으로 목회자는 목회직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b. 현직에 종사하는 목회자는 계속 사역을 하고 다음 사항을 보고하는 한 그 목회자의 직임은 계속된다.

i. 위임 혹은 안수에 의해서 공인된 목회자의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교회에 의해서 인정된 목회적 사역을 잘 감당한다.

ii. 정기적으로 연구와 성장과 갱신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iii. 교단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공인된 제자교회의 교인으로서 활발한 참여 포함)

iv. 교단의 목회자 윤리 강령을 따른다.

v. 목회사역에 맞는 개인적 자격요건을 계속해서 맞춘다.

vi. 사역지가 속해있는 지방회 혹은 총 사목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때에 매년 자격증을 갱신한다.

c. 목사의 직임은 장애나, 목회 직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자격 사항들이 만족 될 경우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의 자유 재량권으로 계속 유지 될 수 있다.

d.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는 모든 목사의 스텐딩 (지위) 을 매년 검토하기 위하여 적절 한 수단을 제공한다. 소수 민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소수 민족 담당 행정 목사들과 협의한다.

e. 안수받은 목사가 섬기던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길 경우 목사직은 유지된다.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는 위임받은 목회자는 새로운 지방회장에게 연락하여 목회직을 유지한다. 지방회장이나 교단 총 사목위원회가 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주는 책임이 있다. 해당 목회자는 기존 지방회와 새 지방회에 이사했음을 알려야 한다.

f. 목회 직 이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안수받은 목사가 이사를 할 경우 그리고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을 경우 목회 직은 잠정적으로 1년까지 보류된다. 은퇴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류기간은 목사가 이사 온 그 지방회에서 검토하고 그 후 자격증을 부여할 때 까지 보류 된다. 안수받은 목사는 그의 목사직에 대해서 기존 지방회와 새 지방회에 먼저 알려야 한다.

3. 은퇴 목사, 위임 목회자, 안수 목사의 목회 직 자격증

a. 은퇴 시 위임 목회자는 승인된 곳에서 목회를 계속할 경우에는 목회직을 유지한다. 비활동 은퇴 위임 목회자는 지방회의 자유재량에 의해 목회직을 유지 할 수 있다.

b. 안수 목사는 은퇴 시에 목사직을 유지 한다:

i. 사역을 계속 할 의도가 있는 은퇴 목사는 그가 속해있는 지방회 혹은 총 사목 위원회가 요구하는 목사 자격증을 매년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모두 갱신해야 한다. (ⅡFⅠc 참조)

ii. 목사직이 수여될 때 활동적인 은퇴 목사는 교단 연감에 활동 은퇴 목사 리스트에 등재된다.

iii. 위와 같이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 은퇴 목사는

a) 위임이나 안수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목사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b) 정기적으로 연구와, 발전과 갱신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c) 인정된 제자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됨을 포함해서 제자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d) 계속적으로 목회사역에 부합하는 개인적 자격 요건을 준수하고 목회자 윤리 강령을 준행한다.

iv. 더 이상 목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은퇴 목사는 비활동 은퇴목사 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비활동 목사직을 인정받은 은퇴 목사는 여전히 교단 연감에 비활동 은퇴 목사의 명단에 오를 수 있다. (iR)

b) 비 활동 은퇴 목사는 그가 살고 있는 지방회가 요청하는 대로 매년 목사의 직을 갱신하여야한다.

c) 위와 같은 자격을 갖기 위해서, 비활동 은퇴목사는 목회자 윤리강령을 준행해야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있는 제자교회의 사역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교인이어야 한다.

v. 비활동 은퇴 목사가 다시한번 목회사역을 맡게 된다면 그는 다시 활동 은퇴목사로 신분을 바꾸어야 한다.

4. 목회직의 중지 혹은 종결

a.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하나나 그 이상 해당 될 때 목회직이, 지방회, 혹은 총사목 위원회에 의해서 검토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다:

i. 목사 스스로 임시 혹은 항구적으로 실제사역에서 물러나기를 원한다.

ii. 목사가 자신의 제자교회 목사직을 다른 교단이나 제자교회가 아닌 교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

iii. 목사가 더 이상 목회적 사역이 아닌 직업에 풀타임 종사한다.

iv.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목사의 직 연례 갱신 일에 응하지 않는다.

v. 목사가 더 이상 목회사역에 부합하는 개인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목회자 윤리강령 을 준수하지 않는다.

vi. 은퇴 목사가 목회자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

b.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가 목사직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목사직 중단 혹은 종결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하겠다는 서면통보를 해당 목사에게 한다.

ii. 해당 목사가 소수 민족일 경우 총회 본부에 근무하는 관계 행정 목사에게 전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iii.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 위원회가 청문회를 연다.

c. 해당 목사가 그 검토를 시작할 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목사직의 종결 가능성을 두고 검토 되도록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에 서면 통보한다.

ii. 지방회나 총 사목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와 협의한다.

d. 목사의 직은 다른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에 의해서 중지 혹은 종결 되었을 지라도 목사직의 종결이나 중지를 취할 수 있는 기관 즉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의 추천으로 목사직이 수여 될 수도 있다.

5. 목사직의 포기

목사가 목사직을 포기할 때, 목사직은 그것을 결정한 지방회나 총 사목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다시 회복 될 수 있다. 단 지방회나 총 사목위원회는 목사직 회복 전에 남아있는 비행의 혐의에 대해서 처리 하여야한다.

6. 무효가 된 목사의 직

목사의 직이 무효가 될 경우 동일한 위원회 즉 지방회나 총 사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목사의 직이 회복 될 수 있다.

사. 안수 목사직의 인정과 조정 Recogntion and Reconciliation of Ordained Ministries

1. 연합 그리스도 교회 (UCC)의 안수 목회직 인정

Ordained Ministerial Partner Standing with the United Church of Christ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CC)는 서로의 안수 목사직이 상호 효과적인 은혜의 사역이라고 인정한다. 또한 이러한 사역이 유효하며 예수그리스도의 한 교회의 사역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교단의 안수 목사직은 일치한다. 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직을 받은 목사는 상대 교단의 안수 목사직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안수 목사직 “ 이란 타이틀과 ” 안수 목사직 동반자 자격 “ 이라는 타이틀은 두 교단의 인정과 일치를 나타내는 협력정신과 개개의 특성을 증명한다.

a.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목사가 안수 목사직을 갖고 있으면, 제자교회의 목사 안수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b. 마찬가지로 제자교회 소속 목사가 안수 목사직을 갖고 있으면,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 안수직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c. 만일 어느 사람이 두 교단 중 어느 한 교단에 속하면서 목사직을 상실하면, 같은 효력을 다른 교단에서도 적용된다.

d. 제자교회의 안수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CC) 목사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는 제자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안수 목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는 제자교회의 안수받은 목사의 권한과 책임을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초교파적 권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i.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안수 목사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지방회 사목 위원회에게 제자교회의 역사, 행정, 사역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알고 증명할 수 있다면, 안수 동반자 자격이 주어져 청빙 과정을 제자 교회 내에서 밟을 수 있다. 제자교회내의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는 현재 이 시점에서 아직은 주어져 있지 않다.

ii. 제자교회의 부름을 받은 연합그리스도의 교회 안수 목사 동반자는 그가 부름을 받은 지역 지방회에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되면, 매년 갱신을 위해 그 자격이 검토된다.

iii.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CC) 안수 목사는 제자교회를 섬기는 것에 한해서 제자교회 내의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는다.

iv. 제자교회에서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UCC 목사는 안수 목사직을 UCC 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v. 안수 목사직은 부름 받은 제자교회 연합회에 보관된다.

vi.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는 UCC 목사는 제자교회와 관계를 유지 하며 인정된 제자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vii. 한 지방회에서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가지는 UCC 목사는 제자교회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viii. 제자교회 내에서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는 UCC 목사는 안수 목사 직에 대한 지원을 받기위해 제자교회와 관계를 맺는다.

ix. 제자교회 내에서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UCC 목사는 그 지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회와 안수 목사 직을 수여한 UCC 에 책임이 있다.

x. 제자교회 내에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UCC 목사와 관계되어 있는 징계처분 검토가 제기될 때, UCC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UCC 연합회는 그 징계처분 검토 과정에 대해 정보도 받고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청 받는다.

xi. 제자교회와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UCC 목사는 다른 지방회로부터의 청빙을 수락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새 지방회로부터 그 목사직 지위가 검토되고 매년 자격증 갱신을 위해 심사 되어야한다.

e. UCC 내에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자교회 목사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는 UCC 의 안수 목사로 부름을 받은 제자교회의 안수 목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는 UCC 의 안수받은 목사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초교파적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다.

i. 제자교회 소속 안수받은 목사가 UCC 의 역사, 정책, 사역에 대한 지식을 그가 거주하고 있는 연합회소속 위원회에게 증명하면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가 주어져 청빙 원서를 UCC 교단에 제출 할 수 있다.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는 UCC 교단 내에서는 아직 이 시점 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ii. UCC 교회에서 확실한 부름을 받은 제자교회 안수 목사 동반자는 안수 목사 청빙을 다루는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연합회에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되면 매년 해당 연합회에서 그 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iii. 제자교회 안수 목사는 UCC 교회를 섬길 때 한해서 UCC 교회 내에서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는다.

iv. UCC 내에서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는 제자교회 안수 목사는 제자 교회 내에서 안수 목사직을 유지한다.

v. 안수 목사직은 청빙 받은 UCC 교회가 속하는 지방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vi.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자교회 목사는 UCC 교회의 준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곳을 포함하여 UCC 교단과 관계를 유지한다.

vii. 연합회에서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자교회 목사는 협회와 지방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그리고 총회에 총대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혹은 UCC 내의 언약관계 맺은 이사회의 회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viii. UCC 교단 내에서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자교회 목사는 그의 중요한 목사직 지원자인 UCC 교회와 관계를 맺어야한다.

ix. UCC 교회 내에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자교회 목사는 그 직위를 다루는 연합회와 안수 목사직을 감당하는 제자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

x. UCC 교회에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자교회 목사와 관련 하여 징계 검토가 제기 된다면, 그 지위가 유지되는 제자교회의 지방회는 보고를 받고 그 징계절차에 참여 하도록 초청을 받아야 한다.

xi. UCC 교회와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자교회 목사가 다른 협회에 속하는 청빙을 받은 경우. 그는 검토된 후 안수 목사 동반자적 지위가 새 협회로 이전 되도록 되어있다.

2. 다른 교단에서 안수받은 경우

다른 교단에서 혹은 제자회가 아닌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제자교회에서 안수 목사로 인정 되도록 고려 될 수 있고 목사의 직이 조건부 혹은 임시로 부여 될 수있다.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은 해외 주둔 군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회에 속해 있다.

a.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경우 조건부 혹은 임시 목사의 직을 수여 받을 수 있다:

i. 지원자가 전출 하려는 교단이나 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한다.

ii. 개인적인 신상과 목회적인 경력 그리고 범법 사실여부에 대한 만족한 조사 결과.

iii. 지원자가 지원하는 해당 지방회나 총 사목위원회에 적합한 지원서를 접수 한다.

iv. 조건부 혹은 임시 목사의 직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에 의해서 검토된다.

b. 잠정 혹은 일시적 조건부 목사직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 시킬 때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에 의해 수용 될 수 있다.

i. 제자회 교단에 속한 인정 된 교회에 등록된 교인

ii. 제자교회의 역사, 정책, 사역에 대한 증명된 지식

iii. 학력을 포함해서 목회사역을 위한 전제 조건과 준비과정을 만족 시킨다.

iv. 제자교회 목사지위를 소유하고 있는 목사로부터 감독과 멘토링을 최소 1 년 간 받는다.

v. 아이템 11, A. 2 에 명시된 것처럼 목회사역을 위한 개인적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 할 수 있다

vi. 제자교회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책임감.

아. 교역자 청빙 및 해임 Ministerial Search and Call

1. 일반 원리: 청빙 및 해임: 청빙 및 해임은 제자교회의 목사 지위를 소지하고 있는 목사의 청빙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된 그 과정에 적용되는 전문용어이다.

   a. 목사들과, 교회와 지방회와 총회 사이의 통례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본 문건은 목회적 청빙 및 해임에 관한 일반 원리를 나타낸다.

   b. 자유와 책임의 정신이 제자교회 정신의 유산이다. 개교회와, 지방회와 총회의 사역은 각 영역에 설정된 규정이나 법규 요건에 따라서 청빙 절차를 따르도록 완전한 자율권과 조화를 이룬다. 목사는 이와 같은 원리로 어느 특정한 청빙에 대해서 수락 혹은 거절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모든 것은 청빙과 해임에 관한 체계와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위한 공통의 관심 안에서 언약관계로 협력 함을 뜻한다.

   c. 개교회는 청빙 및 해임에 있어서 지방회장과 소수민족 공동체를 담당하는 총회 행정 목사와 언약관계 정신으로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 빙 및 해임을 위한 가장 주요한 책임은 지방회에 있다. 지방회는 소수민족 담당 총회 행정 목사에게 지방회의 책임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다.

2. 적용 원리:

   a. 제자교회의 안수 목사는 청빙 및 해임 (Search and Call) 과정에 아무 구속 없이 이용할 수 있다.

   b. 제자교회의 위임 목사는 청빙 및 해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원서의 배부는 사역을 위임 받은 해당 지방회에 국한된다.

   c. 해당 지방회의 재량권으로 안수 후보자는 청빙과 해임의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d. UCC 교단의 안수 목사직 동반자는 청빙 받으려는 지방회에 의해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아무 구속 없이 청빙과 해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 개교회, 지방회, 관계기관, 총회는 청빙과 해임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f. 모든 청빙과 해임에 관한 서류들은 권리포기 증서에 싸인 을 한 비밀 참고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목사에게 개방되어있다

g. 비밀서류를 작성한 사람에게 약속되었던 그 비밀은 위반 될 수 없다.

h. 청빙 및 해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안수 후보자와 자격이 있는 안수받은 목사는 모든 목회 직에 지원할 수 있다.

i. 청빙 및 해임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안수 후보자와 자격이 있는 안수 목사는 목회 직 청빙에 관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j. 모든 교회와 지방회와 교육기관 혹은 관련 기관, 그리고 총회 사역 기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사역의 기회가 주어진다. 편견 없이 후보자의 목회적 재능과 능력을 기준으로 청빙을 고려한다.

3. **책임 :**

청빙 및 해임 (Search and Call)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 오피스에서 설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기대한다.

a. 목사: 제자교회의 위임 받은 목회자와 안수 목사는 그들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회의 자문을 받을 책임이 있으며, 청빙및 해임 (Search and Call)오피스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할 책임이 있다. 그들에게 제공된 어떤 청빙도 수용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청빙 조건이나 사역에 대해서 협의 할 자유가 있다. 이 모든일 에 있어서 목사는 전체 교회의 언약관계 안에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i. 제자교회에 적을 두는 순간에 목사는 청빙 및 해임 (Search and Call)오피스에 영구 파일을 위한 정 보를 제공하며, 그 서류철에 최신 정보를 유지한다.

ii. 청빙 및 해임 (Search and Call) 의 목적을 위하여 목사는 목회 프로파일을 개정하고 참고 서류들 완결하고, 목회 약관 서식과 범법 확인 서류들을 갖추어야한다. 청빙및 해임 서 류 들은 목사가 준비하고 제출 했을 때 해당 부서로 분배된다.

iii. 청빙을 원하는 안수 목사는 청빙 및 해임 오피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과정을 이용 한다.

iv. 위임 목회자는 (추후 안수를 원하든 원치 않던) 전출을 원할 경우 지방회나 지역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v. 목사는 원하는 사역 지나 사례비 요청 등과 같이 전출에 제한을 주는 내용들에 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진술한다.

vi. 목사는 청빙 및 해임 서비스 사무소에 추천 서류를 추천할 사람들에게 보내도록 요청 한다. 목사는 추천인들이 추천 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만일 추천인에 의해서 권한 포기 서류에 싸인이 되어 있다면 추천 서류를 받는 즉시 비밀 서류로 분류되어 보관된다.

vii. 목사는 한 번에 한 교회와만 논의 할 수 있다. 교회 청빙 위원회와 지원자는 그들이 다른 위원회나 지원자와는 전출에 관해 논의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 할 경우 "협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둘 중 어느 쪽이라도 협의가 종료 되었다는 선언을 할 때 까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교회에 밝히는 것은 지원 목사의 책임이다.

viii. 목사는 교회 청빙 위원회와 계속 의사소통의 채널을 열어 놓아야한다 청빙에 관심을 표명한 청빙 위원회는 물론이고 특히 교회의 청빙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즉시 교회 회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x. 목사는 만일 그가 지방회에 속한 특정한 교회의 후보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해당 교회의 청빙 위원회에 제출되기를 원하면 지방회에 연락 하여야한다.

x. 목사는 교회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청빙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xi. 목사는 만일 개교회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경우 지방회에 알려 조언을 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상호간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받는다.

xii. 목사는 청빙이 결정 되면 곧 현재의 지방회와 전출 하게 될 지방회와 구직과 청빙 사무소와 은퇴 연금 국 등에 이를 신속히 통보한다.

b. 개체 교회:

제자교회의 전통과, 도안 (The Design) 의 정신에 따라 개체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를 청빙하고, 청빙기간을 정하고, 사역을 뒷받침하고 자체 규정을 따라 사역 종결을 결정하는 권리와 책임이 이 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는 전체 교회와의 언약 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지방회나 지역 담당자들과 협의할 것을 권면한다.

i. 교회는 임박한 목회직의 공석에 대해서 지방회의 자문을 통해 지방회의 절차 안에서 목사 청빙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ii. 교회는 제자교회내의 유자격 목사직을 갖고 있는 어느 목사나 청빙을 추구하는 지방회에서 자격 있는 안수 목사 동반자 자격을 가진 목사 누구나 청빙을 고려해 볼 자유가 있다. 교회는 지방회에 알려서 지원자에 관한 개인 신상 정보와 추천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iii. 교회는 교회에 직접 지원한 목사나 교인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들의 이름을 지방회에 알린다.

iv. 교회는 모든 청빙 후보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개방된 자세로 절차를 밟는다. 편견 없이 후보자의 목회 적 재능이나 능력에 근거해서 청빙한다.

v. 교회의 청빙 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신상 기록과 추천 서류들을 기밀문서로 취급한다. 즉 청빙 위원회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관리한다. 청빙이 결정되고 이를 후보자가 수락하면, 청빙과 관계된 모든 서류들 즉 후보 목사에 관한 청빙 위원회의 회의 비망록 등을 포함한 서류들은 지방회에 보내져 안전과 비밀유지를 위해 지방회에 보관된다. 모든 청빙 절차에 참여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록들은 폐기한다.

vi. 개교회는 청빙 위원회가 접촉한 후보자들과 대화의 통로를 유지한다.

vii. 청빙 위원회는 후보자가 더 이상 후보로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viii. 교회의 청빙 위원회는 여러 후보들과 동시에 대화 할 수 있으나 한 번에 한 사람의 후보하고만 협의 할 수 있다. 청빙 위원회와 후보자는 그들이 다른 후보자들이나 다른 청빙 위원회와 전출에 대해 논의 하지 않겠다는 동의하에

"논의 중에 있음" 이라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둘 중 한 쪽이 "협의 절차가 끝났음"을 선포할 때까지 계속 된다. 목사와 관심의 정도에 대해 구체화하는 작업은 청빙위원회의 책임이다.

iv. 교회는 청빙의 편지를 발행하는데 그 사본을 교회와, 목사와, 지방회와, 청빙 및 해임 청빙 사무소로 보낸다.

x. 교회는 청빙 받은 후보자에게 범법 사실 여부 확인에 든 비용을 환불한다.

xi. 교회는 교회의 능력 한도 내에서 공정한 사례비 (목사관 사용 공제 혹은 목사관 사용 조건 등 포함) 와 적절한 혜택 (연금, 건강보험, 연장 교육, 휴가, 안식년, 사회보장 혜택 등)을 제공한다.

xii. 교회는 사역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실제 비용을 충당하도록 교회 관련 비용을 반환해 주도록 한다.

c. **지방회**

지방회는 청빙에 관여한 교회와 목사 양쪽 모두에게 자문과 안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지방회는 교단총회 소수민족 사역 책임자와 목회 직 공석에 대해 정보를 나누며 협력하여 함께 일한다. 지방회는 대표자를 파견하거나 해당 지역 담당자들과 함께 청빙 및 해임의 책임을 나눈다. 지방회는 전체 교회와의 언약관계의 태도로 참여한다.

i. 각 지방회는 새로운 목회자가 청빙을 받거나 받게 될 즈음에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든지 지방회의 참여에 의해서든지 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ii. 각 지방회는 청빙 및 해임 사무소로부터 이에 관련 자료들을 받아 검토하고 그 중에서 그 지방회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iii. 각 지방회는 자리 옮김을 원하는 모든 목사들을 위해 청빙 및 해임 사무소에 이를 통보하고 구직 절차를 시작하도록 돕는다.

iv. 각 지방회는 청빙 위원회와 청빙에 관한 서류들 중 지방회가 함께 일하는 교회나 기관의 요구에 맞는 후보자 선정에 대해 관련 서류들을 나눈다.

v. 각 지방회는 교회로 하여금 공정하고 동등하게 편견 없이 오직 그들의 목회적 재능과 능력에 따라 후보자를 대할 것을 권유한다.

vi. 각 지방회는 제자교회의 자격을 갖고 있는 목사나 혹은 청빙을 추구하는 지방회에서 자격을 얻은 안수 목사직 파트너의 청빙에 관한 서류를 특정 청빙 위원회와 공유한다.

vii. 각 지방회는 지방회 내에 목사를 찾는 교회들의 목록을 유지하며 자격이 있는 목사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viii. 만일 청빙 위원회가 청빙을 적극 추구하지 않는 어느 목사에 대해 지방회에 연락을 해 온다면 지방회는 해당 목사의 관심에 대해 알아본다. 목사는 관심 있는 교회의 이름과 위치를 알 권리가 있다. 만일 해당 목사가 관심이 있다면, 지방회는 해당 목사를 청빙과정으로 안내한다.

iv. 각 지방회는 청빙을 추구하는 목사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프로파일을 받은 교회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x. 각 지방회는 모든 청빙 및 해임에 관한 서류들을 극비로 취급한다.

xi. 각 지방회는 청빙 및 해임 사무소에 한 목사의 비행으로 인한 자격의 철회를 위한 공적인 행동이나 결정이 있음을 통보한다. 해당 목사는 통보를 받고 그 보고서의 사본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사본은 그 목사의 서류철에 보관된다. (아래 J. I. 참조 바람)

xii. 각 지방회는 다른 지방회의 교회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해당 지방회로 위탁한다.

xiii. 각 지방회는 청빙과 해임 사무소 (UCC) 측에 지방회로 이사 오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지방회 내부에서 이동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통보한다.

xiv. 각 지방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청빙과 해임에 관한 접근을 승인 한다:

a. 해당 지방회에서 안수가 승인된 안수 후보자.

b. 제자교회로 자격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는 임시로 그 자격을 인정받은 타 교단으로부터 온 안수 후보자.

xv. 각 지방회는 지방회 직원의 공석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채널을 통해서 알린다. 교단 웹 사이트, 지방회 출판물, 국내 선교 국, 그리고 다른 출판물들.

d. 국내 선교국

국내 선교국에 있는 청빙 및 해임 사무소 (Search and Call) 는 청빙과 해임에 관한 제자교회의 목회적 기록들의 주요 보관 장소이며 교회의 청빙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국내 선교국은 전체교회와의 언약관계의 정신으로 기능을 담당한다.

i.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제자교회의 모든 목사들의 영구 파일을 보관 유지한다.

ii.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지방회와 총회 사목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제자교회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현행 목사의 목록을 반영하는 목회연감을 보관 유지한다.

iii. 청빙과 해임 사무소는 제자교회의 자격을 소유한 목사들에 대한 자료들과, 유자격 안수 목사 파트너와 지방회에서 승인된 목사들의 자료들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과정을 밟고, 청빙및 해임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지방회와 총회에 공개한다. 청빙 및 해임에 관한 양식은 목사에 의해서 준비되고 제출 되는 대로 해당 지역으로 분배된다.

iv.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청빙의 도움을 신청한 목사의 허락 하에 관련 자료들을 지방회와 총회에 방출한다.

v.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비밀유지 요구를 받으면 참고 자료의 기밀을 유지한다.

vi.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청빙을 추구하지 않는 목사로부터 확실한 허락을 받아야만 그에 관한 자료들을 지방회나 총회에 방출한다. 목사는 그에게 관심 있는 교회의 이름과 위치를 알 권리가 있다. 영구 서류철에 있는 정보가 윤리 강령에 관한 일일 경우에는 허락 없이 지방회장이나 총 사목위원 회장에게 보내 질 수 있다.

vii.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지방회, 총회 각 부서와 초교파 기관 내에 공석인 직원 목록을 안전하게 보관 유지하고 요청 시 자격이 있는 목사에게 개봉한다.

viii.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청빙 관계교육과 정보 자료들을 교회와 지방회와 관계기관과 총회 사역에 이용 할 수 있게 개봉한다.

ix.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교회로부터 요청되는 잠정 후보의 이름을 적합한 지방회에 회부한다.

x.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학생 설교/목회 직을 찾는 안수 후보자들을 적절한 기관의 현장 교육 사무소 혹은 지방회에 회부한다.

xi. 청빙 및 해임 사무소는 지방회와 총회와 모든 공적 활동 기록들을 나눈다. 그 기록들은 지방회 사목위원회나 총 사목위원회가 청빙 절차를 시작한 목사의 거취에 관하여 취해진 공적 활동을 말한다.

e. 교육기관

대학교 종교학부와 신학 교육기관은 교회의 청빙과 해임 절차에 관해 독특한 책임을 가진다. 각 기관은 신학교육 받기전의 사역자와 신학생으로 섬기는 두 그룹의 사역자들이 섬기는 제한된 숫자의 교회와 관계하고 있다 신학대학원 교육기관은 청빙 및 해임을 추구하는 제자교회의 안수 목사로서 자격을 위한 후보자 졸업생을 위해 책임을 가진다. 청빙 및 해임에 있어서 교육기관은 전체교회와 언약관계의 자세로 역할 한다.

i. 교육기관은 학생이 섬기는 교회와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는 그들의 신학교육 기간 동안 학생의 취업에 관계된 일에 지방회와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ii. 교육기관은 학생의 현장 교육 과정 밖에 있는 청빙의 도움을 교회로부터 요청 받을 때 이를 적합한 지방회에 의뢰 한다.

iii. 교육기관은 교회의 청빙 및 해임에 관한 절차에 대한 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회와 협력한다.

f. 교단 총회 사역 (General Ministry)

모든 일을 다룸에 있어 교단총회 사역은 전체 교회와 언약관계 안에서 역할을 한다.

i. 교단 총회 사역은 청빙 및 해임에 관한 모든 요청을 청빙 및 해임 사무소와 해당 지방회장 에게 의뢰한다. 그들은 후보자들의 이름을 요청 받으면 해당 지방회에 의뢰한다.

ii. 교단 총회의 소수민족 사역은 그들 그룹 내의 목회 직 공석을 다루기 위하여 지방회와 협력하여 일한다.

4. 재조사와 심의의 권리

재조사와 심의의 권리는 구직과 청빙의 인지된 법률위반으로 제한되며 해당 지방회와 기관 혹은 교단 본부와 더불어 시작되어야한다. 지방회 차원을 넘어서는 재조사와 심의에 대한 요청은 총 사목 위원회로 의뢰된다.

자. 교역자 윤리 규범 Ministerial Code of Ethics

본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안수 받은 목사로서 혹은 자격증을 가진 목회자로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열심히 지도력 개발에 힘쓰며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다음과 같이 준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개인적 품행

-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에 증인됨 삶을 산다.
- 효과적인 복음사역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바친다.
- 영적훈련, 연구, 배움과 섬김 등을 통해 신앙과, 지식과, 목회 사역에 발전을 이룬다.
- 목회자 가족의 필요 즉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사생활을 존중한다.
- 영적 육적 건강과 레크리에이션, 휴가 등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
-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재정자원들을 성실하게 관리한다.
- 나로 인한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십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
- 감정을 잘 다스리고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며 약물남용이나 악습을 멀리한다.
- 나의 지위나 힘 혹은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는다.
- 나의 성적태도에 대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한다.
-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돌보고 공평한 자세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교회와의 관계

-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회중을 양육하고 섬긴다.
- 주님의 사역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 평신도들의 은사발견과 개발에 정성을 다한다.
-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두려움이나 치우침이 없도록 한다.
- 교회의 성례전이나 복음 사역을 재정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한다.
- 부름 받은 사역지의 성도들과 합심하고 협력하며 그들과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역한다.
- 교회의 재정을 성실하게 관리한다.
- 교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누를 끼치는 어떤 종류의 선물도 받지 않는다.
- 육적 혹은 성적인 학대나 방치에 대한 사례의 경우 보고해야하지만 비밀은 보호해야한다.
- 나의 목회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에 참여하고, 나의 목회신분에 관한 지방회의 평가의 경우에 적극 협력한다.
- 교회와 분쟁이 있을 경우에 지방회장의 의견을 경청한다.

동역 자들과의 관계

- 언약관계를 맺으며 상호 격려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영적성숙을 위해 협력한다.
- 동료들의 문제나 위기를 파헤치기 보다는 격려하고 지원한다.
- 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목회사역은 해당 교회 목사의 초청에 의해서만 수행한다.
- 전임 목회자나 동역 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 나의 후임자들의 목회를 방해하거나 참견하지 않고 독려하며 교우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그들의 목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지역사회와 지방회 교단과의 관계

- 지역사회의 삶과 일에 책임성 있게 참여한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회 정의와 도덕적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게 참여한다.
- 제자교회의 모든 정당한 기관들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제자교회내의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경하며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한다.
- 예수그리스도의 한 교회의 책임 있는 대표가 되며, 복음 증거와 사명, 일치를 추구하는 모든 범 교회적인 활동과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차. 목회자 비행 Misconduct

제자교회는 목회자의 비행이 목회자 윤리 강령에서 표현된 목회자의 언약관계 특성을 위반한 활동으로 이해한다. 목회자 윤리 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판결은 지방회 소속 사목위원회와 총 사목위원회의 책임이다.

1. 보고

지방회 혹은 총 사목위원회는 비행에 따른 목회자 자격 박탈을 위해 공적 행동이나 결정을 하고 이를 청빙 및 해임 사무소와, 국내 선교 국에 보고한다. 이러한 공적 결정 사항은 모든 지방회에 통보된다.

2. 자격 중지

비행으로 간주되는 극단적인 경우에, 목회 자격은 지방회나 총 사목 위원회에 의해서 진행되는 조사와 판결기간동안 임시로 중단 될 수 있다.

3. 성적 비행

a. 지방회의 자격을 가진 목사에게 성적 비행 혐의가 주어져 이를 조사하고 판결하는데 대한 성적 비행의 정의와 처리 과정을 명시 하는 것은 각 지방회의 책임이다. 각 지방회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의 정의와 처리 절차를 검토한다. 이 내용을 지방회내의 목사들과 교회에 알리는 것도 지방회의 책임이다.

b. 지방회 관할이 아닌 목회자의 성적 비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성적 비행의 정의와 처리과정을 구체화 하는 것은 총 사목 위원회의 책임이다. 이러한 정의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총회나 초교파 교회에 속하는 기관들에게 또 목사에게 알리는 것은 총 사목위원회의 책임이다.

카. 청원의 권리 Right of Appeal

총 사목위원회는 청원의 권리가, 청원 시에, 안수, 위임, 자격 전출 혹은 자격에 관하여 불리한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확대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총 사목 위원회는 만일 법적인 절차가 현안중이거나 진행 중일 때는 어떤 청원도 고려하지 않는다.

타. 개정 절차 Amendment Process

제자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다:

1. 총회의 투표권한이 있는 참여자의 2/3 의 투표에 의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며, 총회 소집에 앞서 180 일 동안 개정안이 파일 되 있어야한다 그리고 교회에 분배되고 지방회에는 총회에 앞서 60 일 동안 보관되어 있어야한다.

2. 제자회 총 이사회 출석 2/3 의 투표로 개정안이 채택되며, 최소 투표일 30 일전에 제자교회 총 이사회 회원들에게 그 내용이 우편 발송이 되어야한다.

기본정책이 루이빌 총회에서 승인되다. (1971)

섹션 II: 켄사스 시티 총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승인하다. (1977)

섹션 V: 에나하임 총회에서 목회적 지위에 대해 개정 (1981)

섹션 VI 디모인 총회에서 목회자 전출에 대해 개정 (1985)

섹션 VII 루이빌 총회에서 개정절차 개정 (1987)

섹션 V.C. 핏츠버그 총회에서 제자교회와 UCC 교회의 안수 목사에 대해 인정과 조정 개정 (1995)

섹션 VIII 핏츠버그 총회에서 성적비행에 대해 개정 (1995)

2009 년 인디에나 총회에서 목회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 승인.

섹션 II. H. 총 이사회에서 청빙과 해임에 관하여 개정 (2009)

2009 년에 마련된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은 2011 년 8 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본 문건은 총 사목위원회의 운영 서류이다.

미국과 케나다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국내 선교 국 제공

130 E. Washington Street, PO. Box, Indianapolis, Indiana 46206-1986

Phone: 888/346-2631; Fax: 317-635-4426